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5483

발의연월일: 2024. 11. 12.

발 의 자:조인철・박균택・이건태

이개호・문진석・정준호

최형두 • 전진숙 • 김영환

위성곤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로 하여금 보험가입 등 금융 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 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자동차보험의 경우,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보험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예컨대, 비장애인은 개인 소유 차량 사고 발생 시 보험서비스로 렌트카 대여와 교통비 지급 중 선택할 수 있는 반면 장애인은 운전보조장치 부착차량이 없다는 이유로 렌트카 대여가 현실적으로 불가하여 비장애인과 달리 교통비를 받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없음.

이에 자동차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로 하여금 장애인에게 보험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7조).

법률 제 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손해보험업을 경영하는 자 중 같은 호 다목의 자동차보험을 제공하는 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자동차보험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는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	제17조(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
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생	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u>①</u> (현
략)	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u> <신 설></u>	②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
	2호에 따라 손해보험업을 경영
	하는 자 중 같은 호 다목의 자
	동차보험을 제공하는 자는 장
	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
	등하게 자동차보험서비스를 제
	공받도록 하는데 필요한 정당
	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u> <신 설></u>	③ 제2항에 따른 정당한 편의
	의 구체적인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